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및 등록번호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 보완

3.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 부여 신청 시 첨부서류 중 국적증서 삭제(안 제13조)

- 국적증서는 취득 후 개명·혼인 등의 사유로 인적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삭제하고, 등록번호 부여는 해외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여권 사본과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 서류로 인정

나. 등록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성별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및 등록번호 변경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이나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확인받은 여권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중 국적, 성명, 성별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되어 등록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신청에 따라 등록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을 변경한 때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생 략)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u> ③ (생 략) <u><신 설></u>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현행과 같음)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이나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확인받은 여권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등록사항 변경신청) ①</u> <u>제13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중 국적, 성명, 성별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되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사항변경신청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 <u>②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신청에 따라 등록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을 변경한 때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변경</u>

<u>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u>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4116